

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집중호우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, 전파, 반파, 침수된 건축물에 부과되는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 (특정부동산) 면제

5. 검토의견

- 금번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
-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건축물의 유실, 전파, 반파,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호우 피해 주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충청북도에서는 공공시설 415억 9백만원, 사유시설 131억 6천만원 등 총 546억 6천9백만원의 피해를 입었고, 유실, 전파, 반파, 침수된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부담할 지역자원시설세 100%를 감면시켜 줌으로써 다소나마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 감면액이 총 1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부담경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1부. 끝.